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: 제2026-61호(2026. 7. 6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해양봉사활동용 및 레저용 보트 계류시설과
부대시설(컨테이너 및 테라스)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1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 : 1,035㎡ (2026. 7. 7. ~ 2029. 7. 6.)
5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 명 : 진해해양봉사대
 - 주 소 :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1번지

2026. 7. 6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